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·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추가하여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3에 제4호,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고금, 기금 여유자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·수익성 제고를 위해
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

5.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
판단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

제1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10억원”을 “4억원”으로 한다.

제110조제2항에 제6호,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관련한 사항

7. 「국고금관리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급한 선금의
반환과 관련한 사항

제111조제1항 중 “기획재정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국토교통부·조달
청과”를 “기획재정부·국토교통부·조달청과”로 한다.

제111조의6제5항 중 “10명 이내의”를 “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
명 이내의”로 한다.

제113조제4항 중 “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서면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거나, 자문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를 무효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)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3일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5조(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 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한 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7조의3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)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“계약의 목적·성질·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7조의3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)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“계약의 목적·성질·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7조의3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)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“계약의 목적·성질·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7조의3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)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“계약의 목적·성질·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7조의3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)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“계약의 목적·성질·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			4. 국고금, 기금 여유자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·수익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
<신 설>				5.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
제110조(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)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	제110조(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) ①(현행과 같음)	제110조(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) ①(현행과 같음)	제110조(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) ①(현행과 같음)	제110조(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) ①(현행과 같음)

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
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
1. 공사 계약의 경우: 다음 각
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
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: 추
정가격 10억원

나. ~ 다. (생략)

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111조(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
의 위원) ① 법 제29조제3항 각
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
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
지명하는 사람”이란 기획재정부
· 국방부 · 행정안전부 · 국토교
통부 · 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
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
1. (현행과 같음)

가. -----

----- 4억원

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제59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
이자와 관련한 사항

7. 「국고금관리법 시행령」 제40
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급한
선금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

제111조(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
의 위원) ① -----

----- 기
획재정부 · 국토교통부 · 조달청
과 -----

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
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
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
각 1명을 말한다.

제111조의6(소위원회)

① ~ ④ (생략)

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
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
원으로 구성한다.

제113조(조정)

① ~ ③ (생략)

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
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
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
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
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
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을 위원
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<신설>

-----.

제111조의6(소위원회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위원장이 회의마
다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-----
-----.

제113조(조정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서면과 계약
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서를 위
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
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
치지 아니하거나, 자문결과서를
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를
무효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

	부터 시행한다.
<신 설>	제2조(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<신 설>	제3조(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)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3일부터 적용한다.
<신 설>	제4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<신 설>	제5조(조정에 관한 적용례) 제1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 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한 건부터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213